

 백석대학교	대학원 학위수여 규정	제정일	2001.10.01
		개정일	2025.01.02
		주관부서	대학원교학처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백석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「대학원 학칙」 제29조(학위수여 및 종별) 및 제30조(명예박사학위 수여)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위수여 자격)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해당 대학원이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논문에 관한 구술시험을 통과한 자, 교과목 6학점을 추가 수강하였거나 학위논문 대체(학위과제,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등)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21.3.1., 2024.6.21.>

제2장 종합시험

제3조(종합시험)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」로 정한다. 다만, 신학대학원은 별도의 종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. <개정 2021.3.1., 2024.6.21.>

제3장 외국어시험

제4조(외국어시험) ① <삭제 2022.2.1.> 학위과정의 학생 중 1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에게 외국어 시험을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」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. <신설 2022.2.1.>

제4장 논문제출·심사·공표

제5조(논문지도 신청)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논문제출 자격) 학위청구논문은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정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그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3.1.>

제7조(논문제출 기간) 학위청구논문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17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의 재학연한 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논문심사)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며 석사과정 3명, 박사과정 5명을 지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. <개정 2021.3.1., 2024.6.21.>

1. 일반대학원, 기독교전문대학원

- 가. 교내·외 대학교 전임교원
- 나.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의 겸임교원, 강사
- 다.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준하는 경력자

2. 특수대학원

- 가. 교내·외 대학교 전임교원, 겸임교원, 강사
- 나. 위 가목에 준하는 경력자

②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세칙」으로 정한다.

③ 논문공표

가.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.

나. 공표방법은 학회지·국내외 학술지·정기간행물 게재, 학술세미나 발표, 단행본 발간 및 기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한다.

제5장 학위 논문 대체

제9조(신청) ① 학위논문제출을 대신하여 교과목 추가수강, 학위과제,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한다. <개정 2021.3.1., 2024.6.21.>

② 학위취득요건을 중도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(소정서식)을 얻어 변경신청원을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학위과제,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등의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④ 학위논문 대체(학위과제,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등) 제출기간은 본 규정 제7조에 정한 기간과 같다.

⑤ 신학대학원의 경우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, 「대학원 학칙」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위논문 대체로 인정한다.

제10조(응시자격) 교과목 추가수강, 학위과제,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4.6.21.>

① 해당 대학원이 요구하는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(예정)한 자

② 학위과제,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심사 전에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

제11조(교과목 추가수강) 교과목 추가수강(6학점)은 수업연한 내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수강할 경우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3.1., 2024.6.21.>

제12조(학위과제) ① 학위과제를 심사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제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과제의 심사는 5월, 1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

정할 수 있다.

③ 학위과제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고,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심사위원 2명 이상의 평가가 각각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. <개정 2024.6.21.>

제13조(학위인정시험) <삭제 2024.6.21.>

제14조(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) ①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의 심사는 5월, 11월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의 심사 결과는 합격,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③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명이상으로 위촉하며,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1.>

④ 졸업연주회, 졸업전시회 등의 개최는 교내 또는 교외의 연주, 전시 가능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
제6장 학위수여

제15조(학위수여 심의와 결정)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수여일 전 소정의 기간내에 학위수여 자격을 심의하고, 총장이 결정한다.

제16조(학위수여 시기)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, 2월과 8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7조(학위수여 및 등록) 총장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전공별·과정별·학위종별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한다.

제18조(학위취소) 학위를 받은 자의 행위가 그 영예에 손상을 끼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학위 취득 사실이 입증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의한 재학, 재적 또는 수료자의 경우 종전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.

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구 규칙 시행 당시의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 규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규칙관련 경과조치) 「대학원학위수여규칙」에서 ‘기독교신학대학원’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‘신학대학원’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[대학원 학위수여 규칙]은 폐지한다. 다만, 종전의 대학원 학위수여 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법인 분리 설립허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-8699(2024.12.11.) 「학교법인 천안백석학원 법인 설립허가 알림」 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적용 등은 종전 내용을 적용한다.